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지 능 형 해 상 교 통 정 보 서 비 스 의 제 공 및
이 용 활 성 화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표준 제정에 따른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조선산업 및 新산업 육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01호, 2020. 1. 29. 공포)됨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 활성화 촉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2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변경하도록 규정

나.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해상무선통신망의 범위(안 제4조)

해상무선통신망의 범위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초단파를 활용한 해상디지털 통신망(VDES) 등 국제기구에서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망 등으로 규정

라.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제공 요청(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전기통신설비 등을 먼저 사용하고 대가 등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과 사후에 협의 할 수 있는 급박한 사정으로서 전시·사변, 재난사태 또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규정.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무선통신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할 경우 관련 내용을 상호 통보하고 공동이용 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의 복구 등에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마. 국가 통합공공망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기관과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 통합공공망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

바. 해상무선통신망 이용기관 등(안 제7조)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공공통신망 사용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상 재난 대응에 관계된 해군과 해양경찰청, 공공기관으로서 해양안전교통공단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이용 목적·방법·기간 등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

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 체계(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아. 운영 인력 및 시설 등(안 제9조)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시설의 요건을 규정하고 해상무선통신망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안 제10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로서 선박의 입항·출항을 지원하는 서비스,
선내(船內)시스템 모니터링 지원 서비스 및 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를 규정

차.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협의회와 정책협의회의 안건을
협의·조정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카. 협의대상 인공구조물의 종류(안 제12조)

해상무선통신망 전파 장애 등의 사유로 인공구조물의 소유자에게 이전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응할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인공구조물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인공구조물 등을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보호수 및 보호구역안의 인공구조물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보호물, 보호수 및 보호구역 안의 인공구조물 등 및 「전파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고정 설치된 인공구조물 등으로 규정

타. 업무의 위탁(안 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및 연계에 필요한 통신망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 전기통신사업자등과의 협의 및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파. 과태료(안 제14조)

토지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및 단말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관계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책이나 사업의 시행일정, 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계산의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해상무선통신망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해상무선통신망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2. 초단파를 활용한 해상디지털 통신망(VHF Data Exchange System: VDES) 등 국제기구에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망

3.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구축·운영하는 통신망

제5조(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제공 요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미리 협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법 제20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복구 등이 필요한 해양수산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등(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은 공동이용중인 무선통신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경 또는 증설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등은 공동이용 중인 무선통신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장애발생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장애의 복구 및 비상대책 등을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

1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목적,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해상무선통신망 이용기관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2. 국토교통부
3. 해군
4. 해양경찰청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6.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7. 그 밖에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목적, 방법, 기간,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및 통신 대상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 이용 목적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정보 제공 체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정보 제공 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계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하여 해상무선통신망에 대한 접속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의 안전한 입항 및 출항을 지원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2. 선내(船內)시스템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갖춘 선박에 한한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기상청, 해군, 해양경찰청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인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

이 지명하는 각 1인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나. 수협

다.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사항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④ 정책협의회 안건을 미리 협의·조정하는 등 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과장급이 되며, 공공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경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협의대상 인공구조물 등의 종류)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보호수 및 보호구역안의 인공구조물등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보호물, 보호수 및 보호 구역안의 인공구조물등

3. 「전파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고정 설치된 인공구조물등 (해당 무선국이 설치되는 안테나 설치대 등의 설비를 포함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및 연계에 필요한 통신망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등과의 협의 및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협의를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평가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연계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

5. 법 제13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 등의 업무

6.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7. 법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말기 설치 비용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홍보 및 포상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10. 법 제24조 각 호의 국제협력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또는 단체)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시설 및 장비	인 력
가.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중앙운영센터 (중앙운영센터)	가. 시설 : 사무실 및 장비실 나. 장비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 서버 2) 정보공유플랫폼(MCP:Maritime Connectivity Platform) 운영 서버 3) DB(Database) 및 관리 서버 4) 모니터링 콘솔 및 운영단말 5)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관제 장비 6) 보안시스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급 이상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 또는 3급 이상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나호, 다호 또는 라호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호, 다호 또는 라호의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해상무선통신망 운영센터 (통신망센터)	가. 시설 : 사무실 및 장비실 나. 장비 1) 응용시스템 2) 해상무선통신망 코어망 3) 네트워크 장비 4) 모니터링 콘솔 및 운영단말 5) 보안시스템	「국가기술훈련법」에 따른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향로표지기사, 토목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조선기사, 일반기계기사 중 1개 또는 해기사(3급 이상)의 자격과 「전파법」에 따른 육상무선통신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
다.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권역센터 (권역센터)	가. 시설 : 사무실 및 장비실 나. 장비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리 서버 2) 모니터링 콘솔 및 운영단말 3)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관제 장비 4) 보안시스템	
라. 해상무선통신망 비상운영센터 (통신망 제2센터)	가. 시설 : 사무실 및 장비실 나. 장비 1) 응용시스템 2) 해상무선통신망 코어망 3) 네트워크 장비 4) 모니터링 콘솔 및 운영단말 5) 보안시스템	

*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각 센터별 인력의 자격요건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또는 해상무선통신망을 직접 운영하는 인력에게 적용한다.(행정지원, 시설·장비 관리 인력 등은 적용 제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자 등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 등에의 출입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1,000	2,000	3,0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법 제31조 제2항	35	70	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연 락 처	(044) 200-6142